

#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

## 1. 개정이유

표준지공시지가 업무 배정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기준 개선을 통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선정기준 합리화 및 단수평가 표준지에 대한 배정제한을 완화하기 위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에 직전 1년간 업무실적 요건을 구체화하고, 감정평가사사무소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한다는 규정 추가(안 제2조)
- 나. 단수평가 대상 표준지의 조사를 공시전문평가법인 이외에 법인 및 사무소 소속 감정평가사(경력 3년 이상)가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(안 제4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##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

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 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  
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선정기준일 직전 1년 전에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 
률」(이하 “감정평가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 
감정평가사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 
제3조제1항제2호(중전의 제1호) 중 “표준재무제표증명(「감정평가 및  
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감정평가법”이라 한다) 제21조에 따라  
신고를 한)을 “표준재무제표증명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 
개설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(중전의 제2호) 단서 중 “신고를 한”을  
“사무소를 개설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 
한다.

다만,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중 제1  
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정평가사는 전체를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하  
여 의뢰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특수토지,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”를 “특수토지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단서 중 “신고를 한”을 “사무소를 개설한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3조제4항에 따라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는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 의뢰부터 적용한다.



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

(이하 “감정평가법”이라 한다)

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로서, 최근 3년간 연속하여 결손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)을 선정기준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감정평가법인등

2. 심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설치

· 운영하고, 심사부서에서 모든 감정평가서의 심사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등. 다만,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(감정평가사가 참여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한 경우에 한한다) 또는 다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·평가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단서 신설>

-----  
-(감정평가법 제21조-----

-----사무소를 개설한-----

-----)  
-----

3. -----

----- 사무

소를 개설한 -----

② -----

----- . 다만,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 중 제1항의 요건을



